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127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7. 3. 22. D 주식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19.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7,909,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1576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3. ‘C은 원고에게 39,961,219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금 17,909,456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4%의, 15,705,856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C의 부친인 망 E은 2017. 2. 22.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망 F과 자녀인 C과 피고, G, H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이후 F이 2018. 2. 16. 사망하였고, C은 2018. 3. 6. 피고,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8. 3.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부채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I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1기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인 2017. 3. 22. 발생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당시 그 원금이 21,192,000원 정도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F 3/11, C과 피고, G, H 각 2/11이고, F의 사망으로 인해 C과 피고, G, H이 F의 위 상속분을 다시 각 1/4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최종 상속분은 $1/4 = 2/11 + (3/11 \times 1/4)$ 이 된다. 나아가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판결금 채권이 E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들어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해의사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1,192,000원 정도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러한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당시 채권자인 D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C이 E의 사망 이후 계속 연락이 없다가 F의 장례식장에 홀연히 나타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연락을 끊었는데, 자신은 C으로부터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E, F의 각 기본증명서뿐인바, C과 피고의 관계 및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별지